

특허양도계약서

XXXX(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XXXX(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양도인"이 보유한 ---- 기술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상 사용되는 아래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의 의미로 한정된다.

- ① "양도기술"이란 다음 각호의 특허(출원포함)를 말한다. 단, 출원중인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양수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별첨1 기재 특허
 2. 전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출원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 출원할 예정인 특허
 3. 제1호의 특허를 우선권 주장하여 출원할 예정인 특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특허로부터 파생되는 분할출원, 계속출원, 일부계속출원
- ② "계약제품"이라 함은 "양도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 및 생산장치를 말하고, 중간체 또는 원료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중간체나 원료를 말하며, "양도기술"이 공정(공정개선 또는 공정대체를 포함)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공정(개선된 공정, 대체된 공정 포함)을 말한다. Pilot Plant 등으로 생산된 시제품의 경우에도 이를 포함한다.
- ③ "생산개시"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제품"을 최초로 생산한 것을 말하며 그 해당일을 "생산개시일"이라 한다.
- ④ "매출액"이라 함은 "양도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을 말한다.
- ⑤ "개량기술"이라 함은 "양도기술"과 목적은 동일하지만 "양도기술"의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양도기술"의 구성요소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효과를 개선시킨 기술을 말한다.
- ⑥ "실시"라 함은 "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권한을 허여받은 자를 "실시자"라 한다.
- ⑦ "실시료"라 함은 "양수인"이 "실시"의 대가로 "실시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제세공

과금 및 소요경비(특허비용, 자문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를 공제한 순이익금을 말한다.

제2조 ("양도기술"의 실시) "양수인"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국내외에서 "양도기술"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3조(계약기간 등)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양수인" (또는 "실시자")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생산개시"를 하여야 하며, "생산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산개시일"을 서면으로 "양도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개시"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양도인"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이를 연기하되, "생산개시"의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총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양도 대가)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양도 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 ① "양수인"은 기술료로 금---원정(W---)을 다음과 같이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도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전자어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지급일자	금액(원)	지급수단
1차	계약 체결 시	금---원정 (W---)	현금으로 지급
2차	20--. --. --.	금---원정 (W---)	(지급수단 기재)
3차	20--. --. --.	금---원정 (W---)	(지급수단 기재)
합계		금---원정 (W---)	

- ② (경상기술료) "양수인"은 경상기술료로 "생산개시일"로부터 본 계약 만료일까지 매년 본 "계약제품" "매출액"의 %를 제5조에 의거 "양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③ 본 계약에 따라 행해진 모든 지불은 여하한 이유라도 "양수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 ④ 본 계약이 해지, 해제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양도기술"이 "양도인"에 반환되는 경우의 경상기술료 정산은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4조의2(경상기술료 계산) "양수인"은 본 계약서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술료를 다음과 같이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 ① 경상기술료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당해연도 경상기술료를 익년도 3월말까지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 ② "양수인"은 전항에 의한 경상기술료 지급 시 관련 세무자료 등 공인된 기술료 산출근거를 "양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양수인"이 제4조 각 항의 기술료 지불을 지연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연도 ■은행 당좌대월금리 이자를 일수별로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양도인"에 지불하여야 한다.
- ④ "양수인"은 대한민국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 보관하고 "양도인"이 제2항에 의한 기술료의 산출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양수인"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전항에 의한 검사결과 정당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양수인"은 이를 즉시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그 차액이 이미 지급한 금액의 ■%를 초과하는 경우 "양도인"이 검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도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양도에 따른 정보제공 등)

- ① "양도인"은 "양도기술"의 양도를 위하여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개월 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1. (기술정보)
 2. (기술정보)
 3. (기술정보)
 4. (기술정보)
- ② 전항의 기술정보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③ 전항의 "양도인"의 기술지원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6조("양도기술"의 개량) "양수인" 또는 "양수인"의 임원 및 피용자가 "양도기술"을 개량하고자 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은 사전에 "양도인"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된 지식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단, "개량기술"의 지분 양도 및 실시권 허여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 ① "양도기술"의 출원, 보정, 등록, 유지, 실시권 설정 등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양수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 ②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상 "양도기술"을 양도한다. "양도기술"의 양도 시점은 계약일 시점 이후로 하며, "양도인"은 "양도기술"의 이전등록 및 명의 이전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는 본 "양도기술"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책임도 없다.

제8조(신의성실의 의무)

- ①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양도인"은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양수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양수인" 또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양수인"은 "양도인"이 요청하는 경우 상업화 진전사항 및 기타사항을 서면으로 "양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기술" 보증면제)

- ① "양도인"은 "양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 시장 적합성과 경제성 및 판로시장 개척 또는 영업 및 판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양도인"은 "양도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 지불을 포함하는 "양수인"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양도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양도인"은 "양도기술"의 특허 출원, 등록 또는 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 ③ 제3자가 "양도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호간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④ "양도인"이 침해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양도인"을 원조하기로 한다. 침해사건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⑤ 제3자의 침해로 인하여 배상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침해배제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와 법률적 조치를 취한 당사자에게 --%씩 배분한다.
- ⑥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양수인"이 더 이상 "양도기술"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
- ⑦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기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양

도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 및 특허권의 제한)

- ① 본 계약은 "양도인"이 제3자를 위하여 동종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② "양수인"은 "양도기술"이 "양도인"이 보유한 타 특허와 이용, 저촉관계에 있을 시, "양도인" 및 "양도인"이 보유한 타 특허에 대해 실시권을 허여받은 제3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비밀보장)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인지하게 될 모든 노하우, 연구결과, 아이디어, 기술정보 및 제반 자료가 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단, 정부, 정부연구사업 관리기관, 법원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등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 ① "양도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의 기한을 두고 "양수인"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양도인"은 기 지급받은 금액(은행도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전자어음 금액 포함)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계약해지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양도인"에 지급하고, 일체의 자료 등을 "양도인"에게 반환하며,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 1. 통보기한 내에 "생산개시일"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생산개시일" 전이라도 "양수인"이 생산 또는 실시권 허여를 포기한 경우

2. "생산개시일" 이후 "양수인" (또는 "실시자")이 조업중단 등으로 실시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양수인"이 제4조에 따른 금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4.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양수인"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5.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본 계약이 해지, 해제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경우 "양수인"은 "양도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제품"의 생산을 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양수인"은 제3자에게 "양도기술"을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양도기술"을 실시토록 하지 아니하고 "계약제품"을 생산케 하지 아니한다.
- ③ 본 계약이 해지, 해제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됨과 동시에 "양수인"은 "양도기술"의 반환 절차를 수행한다.

제15조 (손해배상)

"양수인"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양도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명칭사용)

"양수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양도인"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중요사항의 변경)

"양수인"이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양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양도인"의 착오는 "양수인"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18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9조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② 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간 "양도기술"의 양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이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본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 ③ 본 계약의 흠결사항, 기타 해석과 관련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관습에 의하고, 상관습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0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양도금지)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제22조 (기술거래중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기술"과 관련된 본 계약의 기술거래에 관하여 중개기관 주식회사 비즈브릿지(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503호)가 중개를 담당하였음을 확인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중개기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중개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양도인”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양수인”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중개기관”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503호

업 체 명 : (주)비즈브릿지

대표이사 : 김 종 석 (인)

※ 첨부(부록)

1. ---

2. ---

(이하 여백)